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18가단520987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성기창

피 고 1. A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하빈

변론 종결 2020. 9. 22.

판결 선고 2020. 11. 24.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85,012,481원 및 그 중 282,797,137원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2018. 11. 6.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A에 대하여]

피고 A은 원고에게 285,012,481원 및 그 중 282,797,137원에 대하여 2018. 6. 27.부터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 피고들 사이에 2018. 4.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B은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8. 4. 18.
접수 제173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소외 회사의 금융기관 대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두 차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변경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1).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구분	약정일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예정금액(원)
제1약정	2015.06.30.	90,000,000	2016.06.29.	주식회사 D ²⁾	100,000,000
제2약정	2016.06.08.	200,000,000	2019.06.07.	중소기업은행	200,000,000

나. 소외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제때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D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2018. 2. 26. 최초 이자 연체 후2018. 5. 19.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중소기업은행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2018. 6.1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다).

다. 피고 A은 2018. 4. 17.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6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8. 4. 18. 피고 B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원고는 D으로부터 2018. 5. 2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8. 6. 11. 각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받고, 2018. 6. 27. D에 81,591,055원(= 원금 81,000,000원 + 이자591,055원), 중소기업은행에 201,206,082원(= 원금 200,000,000원 + 이자 1,206,082원)합계 282,797,13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위 각 대위변제금 외에 지급해야 할 위약금은 187,390원, 채권보전비용은 2,027,954원이고,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은 이행일로부터 연 10%이다.

바. 원고는 2018. 10. 1.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A은 2019. 5. 20.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서울회생법원2019회단100085) 2019. 5. 31. 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20. 1. 13. 회생계획안 부결을 이유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평군청, 강동구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E기관, F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285,012,481원(= 대위변제금282,797,137원 + 위약금 187,390원 + 채권보전비용 2,027,954원) 및 그 중 282,797,13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6. 27.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8. 11. 6.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 또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사전구상금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되고,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한 행위(이 사건 매매계약)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이자 연체 상태로서 가까운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곧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적극재산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각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재산 감소를 초래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하며,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선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 260,000,000원은 계약 당시 시가 495,294,700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F조합의 공동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211,040,000원을 뺀 284,254,700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인바, 부당한 염가 매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 B은 F조합의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무 211,040,000원을 인수하고, 2018. 4. 17.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전 용도인 강아지집 및 분양샵 용도로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4. 14.~ 2028. 4. 13.(10년)로 정하였으며, 차액 28,960,000원(= 260,000,000원 - 211,040,000원 - 20,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 피고 A에게 지급하였는바, 매매대금 지급 및 액수 산정에 관한 피고 B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이 존재하는 점, ③ 피고 B이 피고 A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 경위, 채무초과 상태 등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고 볼 만큼 피고 A와 친분 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피고 B은, 고가의 수입차인 벤틀리를 타고 다니는 등 재력을 과시하며 사업 확장을 위해 급매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피고 A의 말을 믿고, 10년간 임대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④ 한편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바로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다소 이례적인 사정으로 볼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매매대금 산정 경위, 실제 수수된 대금액수가 그리 고액이 아닌 점, 피고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만으로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일반채권자를 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이상, 원고 주장 사해행위취소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은 나머지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기

1) 제1약정은 최초 약정 이후 '보증금액 81,000,000원', '보증기한 2018. 6. 27.'로 조건이 변경되었다.

2) 이하 'D'이라 한다.